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89호
2. 발의자 : 박성연 의원
3. 발의일자 : 2025. 10. 20.
4. 회부일자 : 2025. 10. 23.

II . 제안이유

-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규모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체계적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지원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마련하도록”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으로 변경함(안 제3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4항).

IV.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박성연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89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특정 학교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규정된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교육감에게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시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를 이행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인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단체장의 책임 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에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중복으로 기술되고 있어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¹⁾²⁾

- 그러나 조례는 목적 규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교육감의 책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안 제3조가 ‘지원’이라는 표현이 두 번 기술된다는 사정만으로 수정될 필요성을 다소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검토(안 제5조제4항 신설)

- 안 제5조제4항은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학교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교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제4항은 중복지원 제한의 대상이 되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반해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예산이나 사업의 범위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안 제5조제4항은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이나 예산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시민 등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의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2) 안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1] 안 제5조제4항 원안 및 수정 의견 비교

조례안 원안	수정 의견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 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4항 중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를 “제1항 각호의 지원을 받은 학교”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³⁾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3)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